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

<목 차>

- 1.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
- 2.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사유
- 3. 대차거래정보 보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김경호
	담당부서 (과)	자본시장과	작 성	직급	사무관
	국장	김정각	자	연락처	02-2100-2655
	과장	변제호		이메일	guardkim@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신용공여 한도의 계산방식 신설				
기본	2.규제조문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제1항				
정보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3.11.~2021.3.16.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재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로 계산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등 금액을 이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					
-		위험분산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규제의	7.규제내용		o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을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46	8 .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자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9.규제목표	O 신용공여 규모 계산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				
	10.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규제의	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적정성	11. 비용편익					
	분석	해당사항 없음				
	(정성분석)	1)				
	12.일 몰 설 정 여 부					
기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이미 매도	
된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	
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	
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u>한도는</u> 금융위원회 위원	<u>한도 및 계산방식은</u> -
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개인대상 '신용거래융자(주식담보대출 포함)'와 '신용거래대주'분을 합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의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 현재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신용공여 규모 계산시 신용거래육자, 신용거래대주 등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
 - →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가 반영되지 않음
 - * 신용융자는 주가하락시, 개인대주는 주가상승시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대안명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 마련(금융위원장 결정)
규제대안1	ıШΩ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을
내용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규제대안의 비교

1) 현행유지안 :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금액을 단순 합산

2) 규제대안1 :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신용 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투자협회	- 신용공여 규모 계산시 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된다면 증권사의 신용거래대주 취급 확대 기대	-

3. 규제목표

□ 신용공여 규모 계산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신용공여 규모 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수단 외 별도 수단 없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일몰설정	우선허용·	
기술	경쟁	중기	규제설계	여부	사후규제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신용공여 규모 계산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신용공여 규모 한도 규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신용공여 규모 한도 규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 규모 한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는 한편, 보완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3. 종합결론
□ 신용공여 규모 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공매도 한 자의 유싱	-증자 참여 예외적 ㅎ	1용		
기본	2.규제조문	금융투자업규정 제6-3	· 사조			
정보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2항 제3호(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3.11.~2021.3.16.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상증자 발행가격 낮은 가격에 신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	주식을 공매도하여 유 고, 증자에 참여하여 즉식의 상환에 활용함 이 제기		
규제의	7.규제내용	 금융투자회사 내 특정 독립거래단위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 한 경우라도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증자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 				
필요성	8.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금융투자회사 ○ (이해관계자) 주권상장법인, 금융감독원 등				
	9.규제목표	 무위험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지원하되,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증자참여를 허용하여 증권시장의 원활한 거래 지원 				
	10.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규제의	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적정성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	개 성 원 제 16-34조(유상증자 참여 예외) 영 제 208조의4제2항제3호에서 "증권시 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동일한 법인 내에서 영 제208조의 4제1항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거래에 대한 별도 규제가 부재
 -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 통해 증자 발행가격을 하락시키고,
 - 이후 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차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 2016년 H상선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후 공매도가 집중되었고, 이후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매도 주체들이 과도한 차익을 얻었던 것이 문제된 바 있음
- □ 다만,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할 경우 시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ㅇ 규제대안의 내용

	대안명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적 허용
규제대안1	내용	 금융투자회사 내 특정 독립거래단위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 한 경우,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증자참여를 예외적 으로 허용

ㅇ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다음으로 한정(시행령)
 - ①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정규시장 매매거래 시간 중 매수(체결일 기준)한 경우

- ②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 2) **규제대안1** : 동일한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유상증자 참여 허용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음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투자협회	-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유상 증자 참여를 허용	반영

3. 규제목표

- □ 무위험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지원
 - 다만,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참여를 허용하여 증권시장의 원활한 거래 지원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통한 차익거래가 만연할 경우 발행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권상장법인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저해할 우려
 - ㅇ 다만, 이로 인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자체를 금지할 경우
 - 가격하락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 유상증자 참여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까지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

- 이를 감안하여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증자참여를 제한하고,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일몰설정	우선허용·	
기술	경쟁	중기	규제설계	여부	사후규제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기	ነት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었으
1 1	जा त / ए %	HX TT

- 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는 공1	매도	투자	자의	과도	한 무위	험차익	을 얻	는 형	생위를
방ス	[하기	위한	것으	로 경	중소기	업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	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_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	------

	해당사항	없음
$\overline{}$	" 0 1 0	μ ν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 미국은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에 대하여 유상증자 참여 자체를 제한하고 있고, 일본은 유상증자 참여는 허용하되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한 주식의 상확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
 - 미국의 경우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매수한 경우나 독립된 거래 단위 등에 대해서는 증자참여 허용

<유상증자 관련 미국과 일본의 공매도 규제>

구 분	미 국	일 본
규 제	발행가액 결정 5영업일전	증자 결정 최초 공표일
	~ 발행가액 결정일 사이에	~ 발행가액 결정일 사이에
적용대상	공매도 거래를 한 자	공매도 거래를 한 자
	▪ 유상증자 참여 자체를 제한	■ 증자에는 참여 가능
금 지	• 다만,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매수	▪다만, 배정받은 주식을 공매도를
행 위	하거나 독립된 거래단위 등에 대해	위해 차입한 주식을 상환할 용도로
	서는 예외적으로 증자참여 허용	사용할 수 없음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불공정 거래[*]로 엄격히 처벌(부당이익의 1.5배 이하 과징금)하여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 * 이익 목적 등을 따지지 않고, 유상증자 참여 사실관계만으로 처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주권상장법인 유상증자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보완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3. 종합결론
□ 공매도를 활용하여 쉽게 수익을 추가할 기회를 차단하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기본	2. 규제조문 금융투자업규정 제6-35조 보				
정보	자보시작과 극융투자언에 과하 번류 제180조의(차인공매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3.11.~2021.3.16.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거래를 체결한 지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보를 위·변조가 불가 매도 적발을 활성화	
7.11.01	7.규제내용	o 대차거래정보 보전	관방법		
규제의 필요성	8.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o (피규제집단) 차입공매도 투자자 o (이해관계자) 수탁 증권회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O불법공매도 적발 활성화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9.규제목표발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여 고의적인 위법 시전하단 및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10.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규제의	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적정성	11. 비용편익 분석 해당사항 없음 (정성분석)				
	12.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사후 규제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35조(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영 제20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금
	<u>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u>
	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영 제
	208조의5제1항의 대차거래정보가
	<u>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u>
	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
	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
	2.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
	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보관할 것
	3.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영 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
	다)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보관
	<u>할 것</u>
	4.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공
	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 지체없
	이 대차거래정보를 변경내역 추적
	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입력하여
	보관할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제출하기 전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 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 대차계약은 장외시장에서 당사자 간 이루어지는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존재
- □ 대차거래정보는 불법공매도 여부를 점검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법공매도 적발을 활성화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대안명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규제대안1	내용	o (보관방법)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자정보처리 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자 설비 등을 갖춰 보관

ㅇ 규제대안의 비교

- 1) **현행유지안**: 현행 법령상 차입공매도 한 자에 대한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가 없으며, 금융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가 메신저, 메일 등을 통해 거래했던 기록을 제출
 - 해당 업무 담당자가 퇴사하는 경우 과거 거래기록을 찾기 곤란 하며, 위·변조하더라도 확인이 곤란한 측면

- 2) 규제대안1 :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대차 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보관
 - i) 계약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전자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
 - ii)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보관
 - iii)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 지체 없이 대차거래정보를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입력 하여 보관
 - iv)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보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회,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법 개정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반영
 - ㅇ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국 회	- 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작이 불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관할 필요	반영
금투협회 등	- 다양한 보관방법을 인정하여 피규제자의 규제준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반영

3. 규제목표

□ 불법공매도 적발 활성화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여 고의적인 위법 시도 사전차단 및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가 선행될 필요
 - 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적발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성이 저해되어 국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
 -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참여비중이 급증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불법공 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
 - 다만,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차거래내역을 정부 등 특정 기관에 집중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 대차거래 당사자가 직접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타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일몰설정	우선허용·	
기술	경쟁	중기	규제설계	여부	사후규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동 규제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에 대해 대차 거래정보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외의 경우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대차거래 방법 등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없으나, 미국·유럽 등을 중심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해외 대차전산화 플랫폼 관련>
□ 해외 주요시장에서 글로벌 IB 등은 대차거래 과정에서 Equilend 시스템 을 주로 활용
* 뉴욕 소재 기업으로 창립 멤버는 모건스텐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메릴린치, 리먼 브 라더스, 베어스턴스, 바클레이, 노던 트러스트, 스테이트 스트리트, UBS
○ Equilend는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대형 IB들이 대차거래 증권의 인수·도 중개 등 거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만든 회사
□ 대상 증권의 소속 국가와 상관없이 대차거래 당사자 모두 Equilend 시스템 사용자인 경우 해당 시스템을 사용

다만, 대차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Equilend 사용자가 아닌 경우
 또는 해당 대차거래의 특성상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은
 Equilend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

o 타법사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등 다수의 법률에서 사후점검 목적으로 정보 보관을 의무화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등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 투자자의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 대차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토록 하고,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계획
-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 규제집행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불법공매도 점검 과정에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보완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3. 종합결론

□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법공매도 근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증시환경을 구축할 필요